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('21.11.1. 시행)

- 1. 관련 :중앙방역대책본부-22742(2021.10.29.)
- 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'21.11.1.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이 단축 시행됨을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 부 유학생 관리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개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 (개편 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4일 간 모니터링 결과 일괄 입력 필요)

<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 >

- (대상) 해외입국자(시설, 자가)
- **(격리기간)** 입국일로부터 **10일 격리**(시설, 자가)
 -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+자가5일 격리
 - * 남아공?탄자니아?칠레?페루,미얀마發 입국자,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
 -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
- (격리 해제전 검사의무) 격리 9일차에 전수* PCR 검사
 - * 종전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(5~6일차)는 생략 →

입국 1일차 검사(시설),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(보건소)만 실시

- (격리 해제)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, 접촉 또는 입국 10 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에 해제
 - 단,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(단기체류 외국인 등)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(2주간 유예, '21.11.14.까지)
 - ☞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(해제전 검사를 늦게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*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)
 - * (예)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→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
- (시행) '21.11.1.(월) 해외입국자부터
 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에 퇴소가능
 - *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 중,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(퇴소전 검사 생략). 끝.

육 亚 대학학사제도과장, 국제교육협력담당관, 교육국제화담당관, 국립국제교육 관전체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1.11.1. 학교상황총괄 **최보영** 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홍은진 장명헌

협조자

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1.11.2.)) 접수 과-6399 () 시행 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/ https://www.moe.go.kr

우 30119 교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2 전송 044-203-7023 / hej0722@korea.kr / 공개